

대법원 2009. 9. 24 선고 2008다92312, 92329 판결 [건물명도] [공2009하,1740]

판 시 사 항

[1]민사재판에 있어 확정된 관련 민사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의 증명력

[2]확정된 관련 민사판결 에서 종전 건물이 현존건물과 동일성을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일부 구조 등이 변경 되었을 뿐이라는 사실이 인정된 경우,합리적인 이유 설 시 없이 이를 배척할 수 없고,건물의 동(棟)수가 변경된 사정만으로 달리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

판 결 요 지

[1]민사재판에 있어서는 다른 민사사건 등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에 구속받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이미 확정된 관련 민사사건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가 된다 할 것이므로 합리적인 이유 설시 없이 이를 배척할 수 없고,특히 전후 두 개의 민사소송이 당사자가 같고 분쟁의 기초가 된 사실도 같으나 다만 소송물이 달라 기판력에 저촉되지 아니한 결과 새로운 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더욱 그러하다.

[2]확정된 관련 민사판결에서 종전 건물이 현존 건물과 동일성을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일부 구조 등이 변경되었을 뿐이라는 사실이 인정된 경우,합리적인 이유 설시없이 이를 배척할 수 없고,건물의 동 수가 변경된 것은 부동산등기법상 건물의 합병등기나 증축에 의한 표시변경등기 등을 통해서

현황과 일치시킬 수도 있는 것이므로 이러한 사정만으로 달리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.

참 조 조 문

[1]민사소송법 제202조

[2]민사소송법 제202조

재 판 경 과

대법원 2009. 9. 24 선고 2008다92312 판결

대전지방법원 2008. 10. 9 선고 2006나11409 판결

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06. 9. 13 선고 2005가단7889 판결

참 조 판 례

[1] 대법원 1995.10.12.선고 94다52768판결(공1995하,3728), 대법원 2009.3.26.선고 2008다48964,48971판결

따름 판례

대법원 2020. 7. 9 선고 2020다208195 판결 , 대법원 2019. 7. 4 선고 2018두66869 판결 ,
대법원 2011. 1. 27 선고 2008다30703 판결

전 문

【원고,상고인】 원고

(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이♣홍)

【피고,피상고인】 피고 1외 2인

【독립당사자참가인,피상고인】 참가인 (소송대리인 변호사 심♡준)

【원심판결】 대전지법 2008.10.9. 선고 2006나11409,11577판결

주 문

원심판결을 파기하고,사건을 대전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.

이 유

상고이유를 본다.

민사재판에 있어서는 다른 민사사건 등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에 구속받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이미 확정된 관련 민사사건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가 된다 할

것이므로 합리적인 이유 설시 없이 이를 배척할 수 없고, 특히 전후 두 개의 민사소송이 당사자가 같고 분쟁의 기초가 된 사실도 같으나 다만 소송물이 달라 기판력에 저촉되지 아니한 결과 새로운 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더욱 그러하다(대법원 1995.10.12. 선고 94다52768판결, 대법원 2009.3.26. 선고 2008다48964, 48971판결 등 참조).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, 독립당사자참가인(이하 '참가인'이라고 한다)이 2000년 무렵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와 그 위에 있는 원심판결 별지1목록 기재 9개 동의 건물(이하 '종전 건물'이라 한다)을 매수하여 2000.7.22. 또는 2000.8.18. 참가인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마친 다음, 종전 건물의 일부 골조만 남겨둔 채 지붕과 벽체 등 대부분을 헐어버리고 새로 건축하여 2000.8. 중순경 원심판결 별지2목록 기재 3개 동의 건물(이하 '현존 건물'이라 한다)을 완공한 사실, 참가인은 2000.8.25.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를 이 사건 각 토지로 분할한 다음, 2000.10.20. 종전 건물 중 제8, 9호 건물을 제1호 건물에 합병하여 등기부상 건물의 표시를 별지1목록 기재 제1건물로 변경한 사실, 한편 주식회사 신■은행은 2000.8.25. 참가인에 대한 대출금의 담보로 이 사건 각 토지와 등기부상 기재된 종전건물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6억 5,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는데, 그 후 위 대출원리금이 연체되자 이 사건 각 토지와 종전 건물에 대한 경매를 신청하였고, 그 경매절차에서 경매법원은 감정평가 결과 이 사건 각 토지상에 있는 현존 건물의 현황이 증·개축 및 대수선 등으로 인하여 일부 구조 등이 변경된 상태이기는 하나 등기부에 기재된 종전 건물과 동일한 건물인 것으로 판단하여 이 사건 각 토지와 등기부상의 종전 건물을 일괄경매한 사실, 원고는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각 토지와 등기부상의 종전 건물을 대금 4억 1,500만 원에 낙찰받아 2002.8.30. 낙찰대금을 완납하고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, 참가인이 종전 건물의 일부 골조만 남겨둔 채 지붕과 벽체 등 대부분을 헐어버리고 새로 건축하였고, 동 수도 다르고 구조, 형태, 면적 등도 상당히 달라져 종전 건물과 현존 건물 사이에 동일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전제 아래, 원고는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각 토지상에 있는 건물을 낙찰받았다고 하더라도 현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고, 참가인이 현존 건물을 원시취득하였다고 판단하였다.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. 원심이 채택하거나 배척하지 아니한 갑 제9호증의 1, 2, 3(각 판결문)에 의하면, 피고 1이 원고와의 약정을 근거로 이 사건 각 토지와 종전 건물의 각 1/2지분의 이전등기를 구하였다가

제1심,제2심에서 피고 1이 패소하였고, 대법원 2005.7.28.선고 2005다15116판결에 의해 피고 1의 상고가 기각되어 위 판결이 확정되었는데,위 판결은 종전 건물이 현존 건물과 동일성을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일부 구조 등이 변경되었을 뿐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,그렇다면,위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에 있어서도 유력한 증거가 된다 할 것이므로,합리적인 이유 설시 없이 이를 배척할수 없는 것이다. 그런데,원심이 채택한 증거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봐도,을 제2호증의 1내지 120(현장사진)이나 병 제7호증의 1내지 18(공사비 영수증 등),감정인 소외인의 1977년과 2006년의 항공사진 및 도면에 대한 감정결과 등에 의해서 참가인이 상당한 규모의 공사를 하여 현존 건물이 종전 건물과 구조와 면적 등에서 다소 차이가 생겼음을 알 수 있을 뿐,나아가 참가인이 종전 건물을 완전히 철거하여 멸실된 상태에서 현존 건물을 건축하였고 그것이 종전 건물과 사회통념상 동일성을 인정할 수 없을 정도라는 점을 명백히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고,원심의 나머지 채택 증거에 의하더라도 위와 같은 점이나 그 밖에 위 확정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관계를 배척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에 대한 피고의 증거가 충분하다고 볼 수 없으며,한편,동 수가 변경된 것은 부동산등기법상 건물의 합병등기나 증축에 의한 표시변경등기 등을 통해서 현황과 일치시킬 수도 있는 것이므로 이러한 사정만으로 달리 보기도 어렵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그 채택 증거들만으로 합리적인 이유 설시 없이 위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사실관계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한 것은 관련사건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의 증명력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.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상고이유에서의 주장은 정당하다.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,사건을 다시 심리 · 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대법관 김영란(재판장) 이홍훈 김능환(주심) 차한성